
- 고양시청소년재단 -
2021년 지도점검 결과보고

고 양 시
〔아동청소년과〕

2021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지도점검 결과보고

I 지도 점검 실시 개요

1. 관련 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지도·감독 등) 및 제26조(검사·보고 등)
-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지도·감독) 및 제11조(검사·보고 등)
-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지도감독)

2. 지도점검 배경 및 목적

고양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 설립 이후 재단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부당사항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고양시 청소년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점검 실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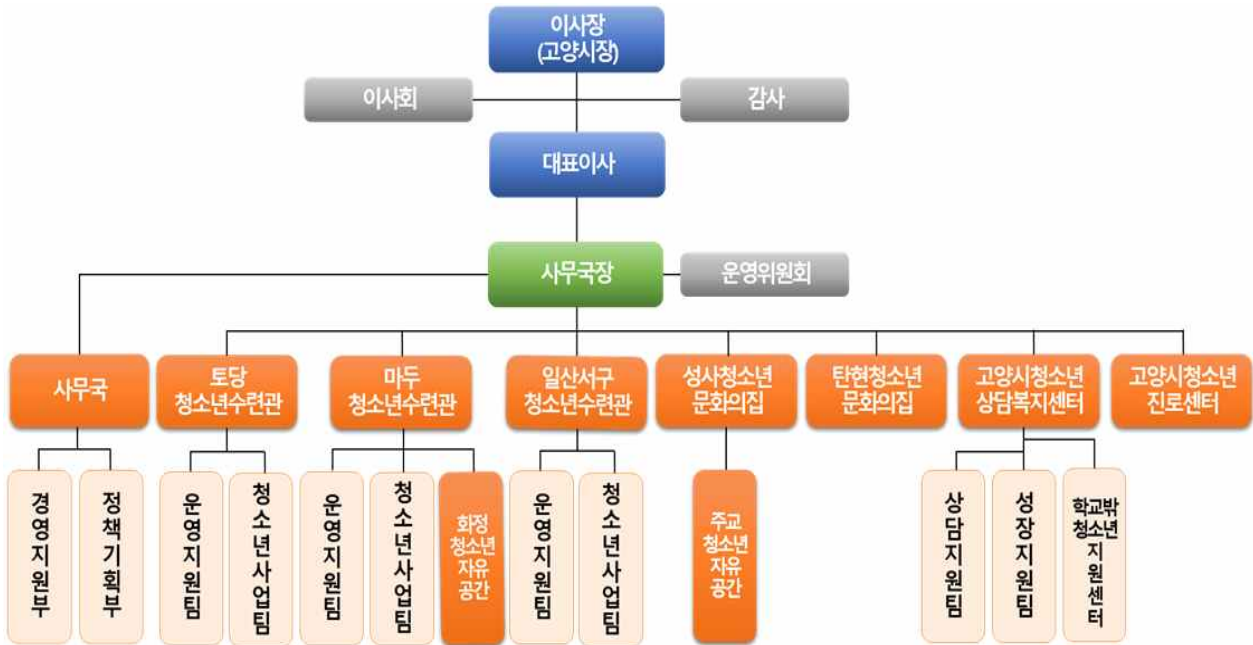
실지 점검에 앞서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재단에 사전 자료를 요구·점검하였으며, 2021. 7. 26.부터 8. 6.까지 청소년팀 2명이 실지 점검을 실시하였음

4. 중점 점검 분야

이번 지도점검은 재단 주요 규정 및 규칙의 미비점과 불합리 사항, 인사·조직·예산 및 회계(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분야 업무추진의 합리성 및 적정성, 기타 재단 업무의 비효율과 내·외부 감사 및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II 청소년재단 현황

1. 조직: 1사무국 3수련관 2문화의집 2센터 2자유공간



2. 인력: 일반직(정원 67명/현원 53명), 공무원(정원 19명/현원 16명)

(2021. 12. 1. 기준)

구분	일반직			공무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사무국	12	13	△1	-	-	-
수련관	토당	13	8	5	4	-
	마두	11	7	4	1	-
	일산서구	11	9	2	4	4
문화의집	성사	4	3	1	4	3
	탄현	4	3	1	3	3
센터	상담	7	5	2	-	-
	진로	5	5	-	-	-
자유공간	화정	-	-	-	2	-
	주교	-	-	-	1	1
계	67	53	14	19	16	3

3. 예산

(단위: 천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	10,287,750	11,156,489	10,649,749	10,526,062

4. 조직별 주요 업무 및 기능

부서명		주요업무 및 기능
청소년 수련관	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및 동아리활동 운영 ○ 청소년 스포츠(농구 등), 문화활동 및 청소년축제 운영 ○ 위기 청소년 및 청소년 선도 지원 프로그램 ○ 청소년 교육활동,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마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형 평화프로젝트, 청소년정책제안대회, 고양시청소년합의회의 ○ 국가 간 청소년교류, 청소년해외문화캠프, 항일유적지 탐방 ○ 지역사회 불법촬영 근절, 양성평등 프로젝트 ○ 청소년교육활동, 학교연계 등
	일산 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역량강화, 한국워크캠프, 포용적 세계시민양성, PBL ○ 고양시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기획봉사, 청소년여행지원사업 ○ 청소년창업지원, 청소년창작 연극, 청소년메이커 지원사업 ○ 청소년권리인식확산, 청소년교육활동,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문화의집	성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청소년동아리 연합활동 ○ 친환경 메이커 프로젝트, 청소년미디어캠프, 청소년 캠페인 운영 ○ 청소년 스포츠(축구 등) 프로그램, 성사창의체험학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탄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연계 대안학습, 청소년자치동아리, 청소년자원활동 프로젝트 ○ 청소년문화놀이 복합공간 운영, 후기청소년 자원활동 ○ 청소년교육활동, 별카페 홍보사업 ○ 청소년공간 디자인 프로젝트 등
센터	상담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 개인 및 집단상담 ○ 부모교육특강, 카운슬러대학,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 청소년이동상담버스 운영, 청소년노동인권서비스, 연합아웃리치 ○ 여성가족부,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미니박람회, 현장직업체험 패키지, 직업실무체험 패키지 ○ 4차 산업혁명 나노드림 플러스,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 진로 영어캠프, 진로기획사업 콘서트, 직업인 멘토링 ○ 꿈길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학부모지원단, 진로진학지원단 등
자유 공간	화정, 주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자유공간 운영(자율적 문화공간 등), 청소년자치위원회 ○ 청소년자발적 봉사활동, 공유주방을 통한 자율적 공간확대 등 ○ 청소년자연친화 프로젝트,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등

Ⅲ 지도점검 결과

1. 총평

-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로 고양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며,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보호 및 복지향상 등 고양시 청소년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6. 11. 1. 설립되었으며, 2020. 1. 토당청소년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화정청소년자유공간의 직영시설 편입으로 현재 모습으로 발돋움 하였음
- 또한 여성가족부 2020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토당청소년수련관, 마두청소년수련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및 2020년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A등급, 고양청소년영상공모전(고양시) 동아리 부문 대상 수상,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우수프로그램경진대회 수상,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인정 받고 있음
- 재단 설립 후 처음 실시한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중요 규정들의 미비점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문책요구 등의 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중요 규정 미비 및 관리 운영 소홀에 관한 사항들이 상당수 적발되었음
- 재단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규정 정비와 직원 직무 교육 실시 등으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2. 지적 사항 총괄: 23건

- 지도점검 결과 총 2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

(단위: 건, 원)

합계	주의	개선	통보	시정	
				건수	환수금액
23	13	6	2	2	420,000

3. 지적사항 일람표

연번	건명 및 요약	조치요구
1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의
2	인사위원회 제척 사유 등 미비	개선
3	직원 사직 미허용 사유 미비 및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4	징계사유 및 감경기준, 징계사유의 소멸시효 등 규정 미비	개선
5	「인사규정」 근거 불분명 용어 사용	주의
6	공무직 정원관리 부적정	주의
7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불합리	통보
8	신분상 조치 시 감점부여기준 미수립	주의
9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관련 규정 불합리	개선
10	복무규정의 직원 의무 사항 미규정	개선
11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개선
12	외부강의제도 운영 부적정	주의
13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관리·운영 소홀	주의
14	수의계약 체결 내역 미공개	주의
15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16	「보수규정」 내용 미비	개선
17	「감사규정」 관리·운영 소홀	주의
18	「출장여비규정」 내용 미비 및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환수: 420,000원)
19	장애인 법정 고용 의무 미준수	주의
20	경영공시 업무 처리 소홀	주의
21	시 종합감사 처분요구 이행 소홀	시정
22	재단 정기감사 등 미실시	주의
23	직원 공가사용 부적정	통보

4. 지적사항 세부내용

1)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 재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며, 위원회 서면 의결은 천재지변 또는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만 제한하여야 함
- ⇒ 그러나 「이사회」 제17조 제1항에는 경미한 사항, 「인사규정」 제8조 제4항에는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불명확한 사항을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
- 「이사회」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1주일 이내에 소관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서면 “별지 제5호 서식” 으로 통보하여야 함
- ⇒ 그러나 2019년부터 2020년 제5회 이사회까지 이사회 심의결과를 소관부서 등에 통보하지 않았음

처분
요구

앞으로 위원회 관련 규정의 불명확한 서면 의결 사유를 명확히 하고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도록 “주의요구”

2) 인사위원회 제척 사유 등 미비

- 인사위원회 운영 시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나
- ⇒ 「인사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만 제척 사유로 명시하고 기피, 회피에 대해서는 미규정

처분
요구

앞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보완·개정하여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요구”

3) 직원 사직 미허용 사유 미비 및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 사직(의원면직) 제한규정은 비위로 조사·수사 등이 진행 중인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책임 강화 등의 실효성 확보가 목적이거나
- ⇒ 「인사규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사직 제한 사유로 업무상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 및 재단 또는 관련 감사기관 등에서 조사 중인 경우만 규정되어 있어, 형사사건 기소 중 및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의 사직 제한이 불가능
- ⇒ 또한 수사기관 및 감사기관에 사직 요청자의 사직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았음

처분	앞으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사직 제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직
요구	요청자에 대한 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주의요구”

4) 징계사유 및 감경기준, 징계사유의 소멸시효 등 규정 미비

-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⑦ 징계에 따르면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 ⇒ 「인사규정」 제47조에 따르면 징계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부 사유만 명시하여 사유 외 징계에 해당하는 사례 발생 시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
- ⇒ 또한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에 따른 징계의 감경기준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불일치하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되어있으나 「인사규정」 제50조에는 3년으로 규정하여 불일치

처분	앞으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지방공무원법」 준용하여 징계사유
요구	및 소멸시효, 감경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주의요구”

5) 「인사규정」 근거 불문명 용어 사용

- 규정에 사용되는 문구 및 용어는 명확한 이해 등을 위해 그 정의가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야 하나
- ⇒ 「인사규정」 제41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리해고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근로기준법」 및 「인사규정」에는 정리해고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그 내용이 없음

처분
요구

앞으로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근로기준법」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그 제한사유와 절차 등을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요구”

6) 공무원 정원관리 부적정

- 「市 산하기관 정원관리 개선 계획」(2021. 2. 예산담당관)에 따르면 공무직은 별도 규정이 아닌 산하기관 정관과 직제규정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 ⇒ 재단은 지도점검일 현재까지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및 「조직 및 정원 규정」에 공무직 정원 19명 미포함

처분
요구

관련 규정에 공무직 정원을 반영하도록 “주의요구”

7)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불합리

- 재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채용은 1차(서류), 2차(필기), 3차(면접)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각 전형별 최고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 ⇒ 같은 규정 제3항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 3차(면접) 시험의 면접점수 동점자 중 다수의 면접위원에게 상위점수를 받은 자를 2순위로 하고 2차 시험인 필기시험 우수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하여 제10조 제2항과 충돌

처분
요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의 합리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을 마련하도록 “통보”

8) 신분상 조치 시 감점부여기준 미수립

○ 재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직무상 훈계, 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총 평정점의 5%의 범위 내에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 신분상 조치를 받았을 경우의 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수립하지 않음

처분 요구	앞으로 감점부여기준을 수립하여 징계처분 등의 신분상 조치를 받을 경우 이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의요구”
----------	--

9)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관련 규정 불합리

○ 재단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직급별 최저 승진소요기간은 6급에서 5급 2년, 5급에서 4급 3년, 4급에서 3급 5년 등 직급별 각기 다르나

⇒ 근무성적 평정점 반영비율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로 모두 동일

○ 또한 객관적인 평정을 위해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의 근무성적 평정점 반영비율을 각 기간별로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하나

⇒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은 50%, 최근 6개월 전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은 30%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최근 평정한 평정점을 높은 비율로 반영

처분 요구	앞으로 직급별 최저 승진소요기간에 따른 합리적인 평정점 반영 기간 및 반영 비율을 마련하도록 “개선요구”
----------	--

10) 복무규정의 직원 의무 사항 미규정

○ 재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8]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밀 엄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재단 「복무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같은 규정 제3조에는 직원의 의무사항으로 성실, 복종, 공정, 품위유지, 청렴의 의무만 명시되어 있어 [별표8]과 불일치

처분 요구	앞으로 「복무규정」 제3조와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8]의 직원 의무사항을 일치·운영 하도록 “주의요구”
----------	--

11)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② 경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재단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 「복무규정」 제9조 제5호에 따라 재단창립기념일(매년 11월 1일)을 유급휴일로 운영

처분 요구	앞으로 재단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요구”
----------	---

12) 외부강의제도 운영 부적정

○ 「국가공무원 복부·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를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지도점검일 현재까지 외부강의 출강 시 공문에 의한 출강이 아닌 유선연락 등에 의해 출강

처분 요구	앞으로 「행동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강의 제도를 운영하도록 “주의요구”
----------	--

13)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관리·운영 소홀

○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와 제9조, [별표]에 재단과 관계없는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 등 불필요한 문구와 내용, 행동강령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별지 등이 포함되어 있음

처분 요구	앞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불필요한 문구와 내용 등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요구”
----------	---

14) 수의계약 체결 내역 미공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명, 계약일자 등 계약정보를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 그러나 지도점검일 현재 2019년 하반기 까지만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공개

처분 요구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고, 계약 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재단 홈페이지에 계약정보를 공개하도록 “주의요구”
----------	--

15)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등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연간집행계획 수립 후 집행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에게 대한 격려 및 지원을 위하여 연말, 설, 추석 또는 의례적인 선물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
- ⇒ 그러나 지도점검일 현재까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직원 및 강사 등 비상근 인력에게까지 명절 선물을 지급

처분 요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요구”
----------	--

16) 「보수규정」 내용 미비

- 재단 「인사규정」 제48조에 따르면 견책부터 파면까지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그 처분에 대해 규정되어 있음
- ⇒ 그러나 「보수규정」 제7조(승급의 제한) 및 제26조(명절휴가비), 제33조(근속년수의 계산), [별표6]에 강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보수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의 징계 가산 유형과 기간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 제1항과 불일치

처분 요구	앞으로 「인사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요구”
----------	--

17) 「감사규정」 관리·운영 소홀

- 재단 「감사규정」 제4조에 제2항에 따르면 일상감사는 고양시 감사규정을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고양시 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시의 출자·출연기관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고양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르면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별표]에 따라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와 계약업무의 일정금액 이상인 공사 및 계약 등은 시 감사부서의 일상감사를 득해야 함
- ⇒ 그러나 재단 「감사규정」의 [별표 1]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및 [별표 2]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이 「고양시 감사 규칙」 및 「고양시 일상감사 규정」과 불일치

처분 요구	앞으로 「고양시 감사 규칙」 및 「고양시 일상감사 규정」을 준용하여 「감사규정」을 정비·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요구”
----------	--

18) 「출장여비규정」 내용 미비 및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② 경비에 따르면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와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적용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비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 ⇒ 그러나 재단은 「출장여비규정」에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의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출장지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비 지급 등 2019년부터 현재까지 420,000원을 부적정 지급(붙임 엑셀 참고)

처분 요구	앞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준용하여 「출장여비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
----------	---

19) 장애인 법정 고용 의무 미준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1천분의 34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 그러나 재단은 위와 같은 의무 고용률 위반으로 2020년 2,216,790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음

처분 요구	앞으로 직원채용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를 준수하고 장애인 채용 계획을 마련하도록 “주의요구”
----------	---

20) 경영공시 업무 처리 소홀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등 8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

⇒ 그러나 재단은 아래 [표 1] “연도별 경영공시 내역” 과 같이 일부 미공시

[표 1] 연도별 경영공시 내역

공시 내용	2019	2020	2021
해당 연도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	○
전년도 결산서	○	○	○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	○	○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	×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	○	미정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	○	미정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	×	×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등	×	○	○

자료: 고양시청소년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처분 요구	앞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경영공시 사항을 정해진 기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주의요구”
----------	---

21) 시 종합감사 처분요구 이행 소홀

- 「고양시 감사 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관은 시정요구 처분을 받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 그러나 재단은 2019년 종합감사 이후 지도점검일 현재까지 아래 [표 2] “종합감사 결과 미이행 내역” 과 같이 처리 및 결과 보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처분요구 사항을 미이행

[표 2] 종합감사 결과 미이행 내역

처분요구일	제목	조치사항	처분요구내용	조치액(천 원)
2019. 10. 22.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시정	계약건 인지세 징수 (총 30건, 720,000원)	300
2019. 10. 22.	강사로 지급 시 원천징수 부적정	시정	강사로에 대한 소득세 미징수, 과소징수액 징수(총 406,603원)	187

자료: 고양시청소년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처분 요구	「고양시 감사 규칙」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요구내용을 이행하도록 “시정요구”
----------	--

22) 재단 정기감사 등 미실시

- 재단 「감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는 정기감사, 일상감사 및 수시감사와 복무감사로 구분하며, 같은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매년 감사 및 수감계획을 파악 수립하여 1월 중에 피감사부서 또는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 또한 「감사규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정기감사는 시행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되어있음
- ⇒ 그러나 재단은 설립일 이후 지도점검일 현재까지 정기감사 계획 수립 및 감사 등을 미실시

처분 요구	앞으로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감사 및 수감계획을 파악 수립하도록 “주의요구”
----------	--

23) 직원 공가 사용 부적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나(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 ⇒ 한편 토당청소년수련관 소속 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0년 일반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로 통보되어 2020. 3. 9.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나 [표 3] “건강검진 실시 내역” 과 같이 1회에 모든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없이 2020. 10. 12. 공가를 재사용하여 위암 검진만 별도로 실시

[표 3] 건강검진 실시 내역

검진일	통보내역		실시내역		검진 기관	공가 사용
	일반검진	암검진	일반검진	암검진		
2020. 3. 9.	대상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실시	유방암, 자궁경부암	허유◎	1회
2020. 10. 12.	-	위암	-	위암	서울***	2회

자료: 고양시청소년재단 및 전○○ 제출자료 재구성

처분 요구	앞으로 적정한 공가 사용을 위한 임직원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유사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방침 등을 강구·마련하도록 “통보”
----------	--

IV 앞으로 계획

-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조치 완료 시 까지 지속적인 관리 예정
- 재단 감사부서(정책기획부)의 자체 정기 감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 담당부서 및 감사관에 보고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감소·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예정